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 보

제1421호 2022년 10월 19일(수)

훈 령

- 속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2

입법예고

-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 10

속초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2년 10월 19 일

속초시장

(직인)

훈령 제773호

속초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속초시에 두는 속초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원사항”이란 「청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2. “주관부서”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“처리부서”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기능)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원심의회(이하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의 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
 2.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 3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「청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조(청원심의의 원칙) 심의회의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의회의 구성)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공보감사담당관,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 소관 사무, 행정,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⑤ 심의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의 대행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심의회 운영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 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,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(화상회의를 포함한다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 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 -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.

제10조(심의회 개최 요구 등) ① 청원의 처리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,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료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·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원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사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것부터 적용한다.

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 건	
일 시	. . .
검 토 의 견	

위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㎡)

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 건	
일 시	. . .
심 의 결 과	

< 청원심의회 위원 >

구 분	성 명	심의 의견			서 명
		찬성 (심의결과 동의)	반대 (심의결과 반대)	비고	
위원장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위원	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60g/m²)

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1. 청원인

- 성명 :
- 생년월일 :

2. 청원 요지

-
-

3. 개최 이유

-
-

4. 요청 시기

-

5. 검토 의견

-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
-

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.

2022년 10월 19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
2. 개정이유 :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개최 주기와 이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지급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- 가. 정의 및 명칭, 용어 정비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13조, 안 제17조)
 - 나. 회의 운영 기준 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4조)
 - 다. 협의체 운영비 지원 규정 중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9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 · 반대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1) 주소 : 우)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
속초시청 복지정책과(희망복지팀)
- 2) 연락처 : 033-639-2725 (FAX 033-639-2380)
- 3) 전자메일 : youjini2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(033-639-27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”를 “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1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
제4조 중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를 “대표협의체”로, “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를 “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
제14조제1항 중 “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”를 “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”로, “임시 회의”를 “임시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: 분기 1회 이상

제17조 중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

11조”를 “법 제11조”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회의”를 “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의 통장·이장·반장의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</u>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<u>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</u> 2. ~ 4. (생 략) 제4조(협의체 기구)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</u> 제13조(직원 및 간사) ① (생 략)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<u>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」 41조제2항에 관한 사항</u> 2. ~ 3. (생 략)	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제2조(정의) ----- ----- 1.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1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4조(협의체 기구) 대표협의체 ----- -----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-----. 제13조(직원 및 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④ (생략)

제14조(회의 등)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 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
② (생략)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③ ~ ⑤ (생략)

제17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"관계인 등"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9조(회의 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회의 등)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 --
----- 임시회의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: 분
기 1회 이상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의견의 청취) -----

-- 법 제11조-----

-----.

제19조(회의 수당)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--

-----.

<단서 삭제>

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②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의 통장·이장·반장의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지역사회보장협의체"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.
2. "실무협의체"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.
3. "실무분과"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4. "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"란 각 동의 위기가정,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제4조(협의체 기구)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.

제13조(직원 및 간사)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
2.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
③ 대표협의체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하고, 실무협의체 간사는 해당업무 실무자로 한다.

④ 협의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14조(회의 등) ①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
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, 임시회의는 위원장(분과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1. 대표협의체 : 연 3회 이상
2. 실무협의체 : 연 4회 이상
3. 실무분과 : 연 6회 이상

제17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"관계인 등"이라 한다)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9조(회의수당)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(붙임 2)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(의견제출 및 처리)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속 초 시 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